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4. 6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(대통령령 제14074호 '93. 12. 31)
에서 『별표9』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
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
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

2. 주요골자

- 내무부장관의 승인된 금액 50,000→50,000~200,000원
※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지급
현재 [화장장근무자 (2명) : 200,000원] 을 지급토록 조례
[위생환경사업소 (17명) : 180,000원] 기개정
⇒ 속초시조례제1478호 ('94. 3. 2)
○ 금회개정안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하수,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60,000 원

3. 개정근거

-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 (대통령령 제14074호)

속초시조례 제 호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 조 (장려수당) - - - - - 분뇨 다음에 "하수, 폐수, 쓰레기"를 삽입하고 『별표4』에 ③항을 신설한다.

【 별 표 4 】

장려수당지급 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③ 하수,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160,000 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6월 1부터 적용한다.

신 구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
제 4조(장려수당) 별표9의 제18호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업무,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,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.		제 4조(장려수당) 영 별표9의 제18호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, 하수, 폐수, 쓰레기 처리업무	
			
			
			
			
			
[별표 4]			
① 생 략		①	
② 생 략		②	
		③ 하수, 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
			160.000 원